

안양시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
안양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양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9일

안 양 시 장

1. 계획의 개요

가. 계 획 명 : 안양시 빈집정비계획

나. 계획목적 :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빈집정비계획의 개요
- 2) 관련 법규 및 계획
- 3) 빈집실태조사 결과
- 4) 빈집정비계획의 수립
- 5)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

라. 계획 범위

- 1) 시간적 범위 : 2026년 ~ 2030년 (5개년 계획수립)
- 2) 공간적 범위 : 경기도 안양시 도시지역

마. 법적 근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2. 주요내용

가.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 : 108호

(단위 : 호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합계
단독주택	19	14	2	35
공동주택	54	6	-	60
그외주택	7	5	1	13
합계	80	25	3	108

나.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

1) 빈집밀집구역 지정 : 안양시의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빈집밀집구역 없음

2) 철거계획 : 10호

(단위 : 호, 백만 원)

구 분	1차연도 (2026년)	2차연도 (2027년)	3차연도 (2028년)	4차연도 (2029년)	5차연도 (2030년)	합 계
개소	1	3	3	3	-	10
금액	20	60	60	60	-	200

3) 보수 및 안전조치 계획 : 2호

(단위 : 호, 백만 원)

구 분	1차연도 (2026년)	2차연도 (2027년)	3차연도 (2028년)	4차연도 (2029년)	5차연도 (2030년)	합 계
개소	-	1	1	-	-	2
금액	-	10	10	-	-	20

4) 관리계획 : 96호

-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소유자의 의견 조회를 통해 거래를 통한 활용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및 외관 정비 요청
-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구역 내 빈집과 구역 외 빈집을 구분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관리 전략 및 방향 설정

5) 빈집 발생 억제 방안

- 거래지원 플랫폼(빈집애(愛))을 통해 소유자 동의 매물과 협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통한 자발적 정비 및 활용을 유도
- 행정복지센터 통합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입·전출·사망·장기부재 등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거주 변동 기반의 빈집 발생 예측
-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, 자활센터 등과 협력하여 빈집 활용 사업 발굴·추진
-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세제 혜택 등 정부·지자체 정책 홍보

6) 재원조달계획

-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빈집정비 유형별 지원 기준
 - 단순 철거 : 호당 최대 2천만원(자부담 10% 별도, 초과금액 자부담)
 - 단순 보수 : 호당 최대 1천만원(자부담 10% 별도, 초과금액 자부담)
- 5차 연도인 2030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수립. 단, 빈집 행정조사에 따른 신규 빈집발생 예정치 반영

3. 관계 도서 : 게재 생략 (안양시청 건축과에 비치)

4. 문 의 : 안양시청 건축과(☎ 031-8045-5634)